

舊韓末의 特許法制定始末



趙 磯 濬

(高麗大學 教授)

① 近代產業社會와 特許制度

特許制度는 工業所有權을 保護하는 制度이며 近代產業社會의 發達과 더불어 世界各國에서 採擇, 實施되어 왔다. 이 制度는 商工業部門에서 새로운 技術을 發明한 者에게 一定한 期間 그 技術使用에 대해 排他的인 獨占權을 許容함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다.

特許制度를 採擇함에 있어서는 各國은 그 나라의 社會經濟의 與件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目標를 考慮에 두어 왔다. 그 하나는 新技術의 發明者에게 그 技術의 使用을 特許함으로써 發明者의 財產權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制度로서 技術發明을 促求하며 一國의 工業發展을 期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目標는 特許制度의 運用에 있어서 調和를 이루면 한나라의 產業化는 크게 促進되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產業化의 進展을 遲延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前者 즉 發明者의 財產權保護에 置重하여 特許期間을 너무 길게 許容하면 新技術의 普及은 沮害하는 것이다며 그와 反對로 新技術의 一般에 대한 普及을 서둘러 特許期間을 너무 짧게 賦與하면 技術發明의 意慾을 夷失케 한다.

特定制度의 運用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目標中에 어느쪽에 政策의 重點을 둘 것인가는 그 時代와 國家의 社會經濟事情에 따라 決定될 問題였다.一般的으로는 中世封建社會로부터近代資本主義社會로의 轉換期에는 特許權은個人의 財產權保護에 보다 큰 比重을 두어 왔다. 近代的 產業化의 條件이 比較的 일찍 成熟되어온 英國에서는 專賣特許制度도 빨리 法으로 制定되었다. 英國에서는 1623年에 專賣特許法이 制定되었으며 이것은 近代特許法의 嘴矢가 되는 것이다. 이近代最初의 專賣特許法에서는 技術發明의 促求라는 點보다도個人財產權의 保護라는 重點이 두어져 있었다. 佛蘭西에서 特許法이 制定된 것은 1791年이며 이 法은 당시 革命政府가 發明權을 人間의 基本權에 立脚하여 特許保護한다는 精神에서 制定公布했던 것이다. 獨逸의 경우는 푸로시아에서는 이미 1815年에 特許法을 制定實施

했으나 統一後 政府에서 이 法을 採擇한 것은 1877年이다. 이와같이 初期의 專賣特許法이個人의 財產權保護에 重點을 두어왔기 때문에 새로 發明된 機械의 普及이 特許權에 끌어이 產業發展에 支障을 招來한 實例는 英國의 產業革命初期에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特許權은 한 나라안에서의 保護에 그치지 않고 國際間에서도 서로 保護받을 수 있도록 各國은 相互協定을 締結하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國際間의 特許權保護는 1883年에 파리에서 締結된 「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에서 처음 實現되었으며 이 條約은 1951年的 리스본會議에서 改正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條約에 依據하여 이에 加盟한 世界各國은相互間에 國民의 工業所有權을 保護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間의 工業所有權協定에서는 技術的 先進國은 自國發明者的 財產保護라는 點에 多은 配慮를 하는 反面에 技術的 後進國에서는 自國의 工業發展이란 立場에서 協定을 締結하게 마련이다.

② 隆熙 2 年의 韓國特許令

우리나라에서近代特許法을導入한 것은 舊韓末인 隆熙 2年(1908年) 8月이었다. 隆熙2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日本의 力이 確固한 地盤을 닦아놓고 있었던 때이며 따라서 韓國의 內政에 대한 日帝의 干涉은 直接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時期였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日帝는 乙巳條約締結以後 韓國內에 日本統監府를 設置했고 이 統監府로 하여금 韓國의 統治實權을 管掌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時期에 韓國政府는 統監府의 指揮下에 許多한 法令을 發布實施하였는데 韓國特許令도 그一環으로 公布된 것이다. 그러나 當時 發布된 數많은 經濟法令, 例를 들면 國有未墾地利用法, 土地建物證明規則, 農工銀行條例, 地方金融組合規則등은 日本國內의 法令을 參考는 하였으나 韓國政府의 法令으로 制定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特許令만은 이러한 法令들과는 달라서 새로이 韓國實情에 맞추어

~制定한것이 아니라 日本特許法을 그대로 翻譯하여 韓國政府名義의 法令으로서 公布한 것에 不過했다. 이형
계하여 韓國特許法은 隆熙 2年 8月 13日字로 制定公布
되었는바 이때에 發布된 特許에 관한 法令은 다음의 6個
法令이었다. 즉 「韓國特許令」(全 5條) 「韓國意匠令」(全
6條) 「韓國商標令」(全 7條) 「韓國商號令」(全 4條) 「韓
國著作權令」(全 7條).

이 韓國最初의 特許權에 관한 諸法令의 内容을 보면
日本特許法을 韓國에서 準用함에 있어서의 注意事項을
一條文化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韓國特許令」을
例들어 보자

韓國特許令(勅令第196號)

第一條 韓國의 特許에 關하여는 特許法에 依하되 但
同法中 帝國이라 함은 韓國, 特許局이라 함은 統監府
特許局, 裁判所라 함은 理事廳及 統監府法務院, 區
裁判所라 함은 理事廳, 大審院이라 함은 統監府法務
院에 該當함.

特許法第 6 條의 帝國은 本令의 適用上 日本國 或은
韓國에 該當함.

第二條 本令은 日韓 兩國臣民의 發明에 關하여 同一한
保護를 與하여 且韓國에서 發明의 保護에 關하여 治
外法權을 行使치 아니하는 國의 臣民及 人民에도 此
를 適用함.

附 則

第三條 本令은 明治 四十一年 八月 十六日로부터 此
를 施行함.

第四條 本令施行前 日本國臣民, 韓國臣民 及 美國人民
이 日本國에서 受한 特許는 本令에 依하여 韓國에서
特許를 受한 것으로 看做하되 但 其特許의 期間은 日
本國에서 受한 其特許의 期間에 從함.

前項의 許證主는 本令施行際に 現에 韓國에서 該發
明에 係한 物品이나 方法을 用하난 者 及 其承繼人에
게 對抗함을 得치 不함.

第五條 本令施行前 美國에서 特許를 受한 日本國臣民,
韓國臣民, 又는 美國人民으로서 其 發明에 關하여
本令施行日로부터 1年內에 統監府 特許局에 特許를
請願한 境遇에는 無料로 特許를 受함을 得하되 但
其特許의 期間은 美國에서 受한 其 特許의 期間에
從함.

以上이 韓國最初의 特許法令의 各條文인바 이밖에
同日附로 公布하는 韓國意匠令, 韓國商標令, 韓國商號
令, 韓國著作權令도 韓國特許令의 경우와 한가지로 日
本法令을 譯出하고 適用上의 注意事項을 一條文化한 것
이다. 이렇게 하여 譯出된 特許令은 隆熙 2年 8月 13
일附로 다음과 같은 韓國政府 內閣告示로서 그 實施를
公告하게 될 것이다.

內閣告示 第 4 號

特許, 意匠, 商標, 商號 及 著作權에 關한 日本國의
現行法令 譯文이 左와 如함

隆熙 2年 8月 13日

內閣總理大臣 李 完 用

이와같은 經路를 거쳐 公布된 崎型의 韓國特許令
은 그 施實에 있어서도 變則性을 보여주고 있다. 즉
特許令은 韓國政府가 公告하면서도 그 主務官廳은 韓
國政府가 아니라 駐韓日本統監府였다는 點이다. 前記
한 韓國特許令의 條文에도 明記되어 있듯이 韓國內의
特許에 關한 事務는 統監府에 特許局을 두고 거기서
管掌했고 工業所有權에 關한 紛糾도 韓國의 法院이 아
니라 理事廳 및 統監府法務院에서 裁判하기로 된 것
이다. 그러므로 特許令의 施行에 따른 各種 施行細則은
모두 統監府令으로 公布實施되었다. 흔히 隆熙 2年에
公布된 韓國特許令을 그 名稱만을 보고 韓國政府에서
制訂公布하고 그 實施權을 管掌한 것으로 보기 쉬우나
其實은 위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그것은 日本特許法의
領土的擴張에 不過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韓國
人의 工業所有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公告된 것이라기
보다는 韓國에 進出한 日本人工業所有權을 保護할 目
的으로 公布된 것이었다.

舊韓末의 韓國政府나 企業人們은 아직도 工業所有權
에 關해서는 文字그대로 白紙狀態였으며 一般國民도
이에 대해 아무런 理解나 關心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日帝가 日本特許法을 아무런 修正도
없이 또 韓國內 實情에 關한 何等의 考慮함이 없이 譯
出하여 韓國에 延長實施코자 할때에 韓國政府는 別다
는 異議없이 이를 받아드렸고 企業人이나 民間人側에
서도 何等의 抵抗이 없었던 것은 그 法令이 뜻하는 經
濟的意義를 全히 理解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公布된 韓國特許令이 發效를 보게 된 1908
年 8月 16日부터 同年末까지 統監府 特許局에 出願한
件數의 國籍別內譯을 보면 다음과 같다

—25面에 계속—

統監府特許局特許出願

(1908年末 現在)

國籍別 權利別	日本人	韓國人	美國人	計
特 許	109	—	1	110
意 匠	9	—	—	9
商 標	364	5	18	387
著 作 權	1	1	—	2
總 計	483	6	19	508

蓄電池에 연결하여 60사이클, 120볼트 交流發電, 1.5 kw짜리를 市販하기 시작했다.

사진 7은 미국 Sandia研究所가 計劃하고 있는 대규모 發電用垂直風車塔인데 6個의 風車를 연결하고 있다. W.H.Band氏의 그림이다. 혹은 사진 8과 같이 34個의 水平風車發電機를 연결하여 海上에 놓여 대규모 發電하는 計劃도 있다.

매사추세츠大學의 土木學教授 W.E.Heronemus와 그의 동료들은 뉴잉글랜드와 온타리오湖 등 水上에 높이 3백피트짜리 發電塔 수백개를 연결하여 여기서 얻는 電力으로 물을 水素·酸素로 分解시켜 水素를 물속 탱크에 저장, 파이프로 陸地에 輸送, 燃料電池(Fuel Cells)로 사용할 모양이다.

小規模風力發電

유류파동 이후 太陽熱과 더불어 公害 없는 에너지로 山岳지대, 島嶼地方 혹은 가정용 소규모 風力發電은 세계各國에서 봄을 이르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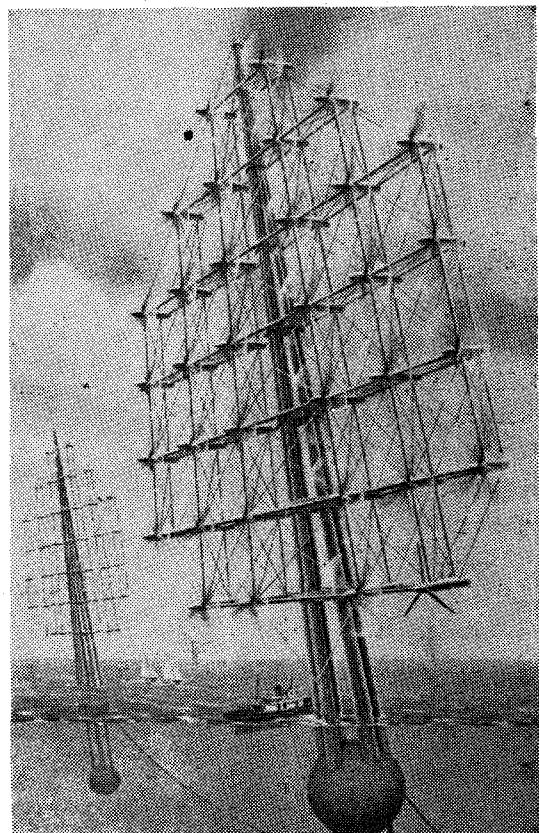
벌써 1950년부터 길이 2m의 3葉프로펠러式 風車를 이용한 소규모짜리가 등장했고 이를企業化한 會社들이 속출, 각종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風車는 秒速 4m의 바람만 있어도 稼動할수 있고 10m以上이 되면 自動的으로 回轉速度가 조종되는 기어裝置가 달려 있다.

直徑 125피트의 多葉式風車로는 出力 1kw짜리가 市販되고 있고 北海의 아이슬란드에서는 2重式 10葉프로펠러風車 70kw짜리가 등장하는등 最小 1kw에서 1

백 kw까지 각종 소규모의 가정용이 선을 보이고 있다.

혹은 太陽電池와併用하는 方法도 개발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 8〉 美國 뉴잉글랜드와 온타리오湖上에 세워진 水平發電機

—8面에서 계속—

앞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特許件이 發效된 이 해 4個月半의 期間에 特許局에 出願된 總件數는 508件이며 그中 483件은 日本人의 出願이고 韓國人의 出願件數는 단 6件으로서 美國人の 18件보다도 下位에 있었다. 또 韓國人出願件數 6件도 그 內譯을 보면 商標 5件 著作權 1件으로서 發明特許는 한件도 없었던 것이다.

단지 韓國人的 技術水準과 工業所有權에 대한 關心度가 그 얼마나 低調했던가는 이로서 呆徊히 짐작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變則的으로 公布 實施되어 오던 韓國特許法은 韓日合邦과 더불어 撤廢되고 日本特許法을 韓半島에 直接準用하게 되었으며 特許行政도 日本中央特許機關의 管掌下에 들어가고 말았다. ⑧